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5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이양수・박준태・박덕흠

배준영 • 조지연 • 강대식

서범수 · 이종배 · 김소희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 정하고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 를 위한 적극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감염성이 높아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추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

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 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의 재선충 및 재선충병 보관·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4 신설).
- 다.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적 극적으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이 가능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 라.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함(안 제13조의2).

법률 제 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을 "훈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을 "양도·이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을 "등"으로 한다.

1. 감염목등의 벌채명령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4(재선충 분리·분양신고 등) ①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재선충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재선충의 분양계획을 산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연구기관의 재선충 및 재선충병 보관·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연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처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재선충의 분리·분양계획 신고 절차 및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를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 그 밖에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의 제거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 서류 등)"을 "(방지계획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방제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완료서(이하 이 조에서 "방제계획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지전용등"을 "경우"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를 "방제계획서등을 제출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방제계획서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방제계획서등"으로 한다.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방제 계획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또는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산지 또는 산림에 소나무류가 없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소 나무류 벌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채취 및 제30조에 따른 채석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입목벌채
- ② 제1항에 따라 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이하 이 조에서 "방제완료서"라 한다)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5.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 해 또는 회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충 분리·분양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재선 충을 분리하거나 분양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
행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	행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	
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u>다음</u>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	<u>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u>
할 수 있다.	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	1. 감염목등의 벌채명령
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	
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	2 <u>한중</u>
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	
<u>증</u> ,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	3 <u>양도·이동</u>
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u>양도·이동</u> 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	4
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u>는</u>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 ③ (생 략) <신 설> -----

제10조의4(재선충 분리·분양신 고 등) ①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한 자는 지체 없

② · ③ (현행과 같음)

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u>한다.</u>

② 재선충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재선충의 분양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③ 산림청장은 연구기관의 재선충 및 재선충병 보관·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연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처리결과 를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선충의 분리·분양계획 신고 절차 및 지도·점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지 ①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 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 림을 금지한다. 다만, <u>학술연구</u>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⑥ (생 략)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 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 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 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 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또 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 용등"이라 한다)을 신청·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검	등	에	필요	오한	- 入	·항	은	산	림견	સે <u>૦</u>
	<u>장</u>)	정호	하여	고	시	한디	<u>ŀ.</u>			
제	123	조(발신	생지	역	주	변	산	림관	}리)
	1										-
											_
											_
											_
											_
					•			<u>-</u> 희	-술	연-	<u>구</u>
	등	공	익건	덕 트	곡적	0	로	하늮	= {	조肓	<u> </u>
				ユ							
	식기	천	또:	느	산립	발처	로/	서	0].	용 두	
				있는							
											_
	2	~	6	(현	년 행.	과	같-	음)			
세				방ス] ス	l] 출	-)
	1	빈	·출·	금지	구	역 어	비서	τ	}음	Z	_ }
				위를							
											_

제13조의 건당시계획자 등의 제물)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방제계획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산지 또는 산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 한다.

- ②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한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 에 소나무류가 없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소나무류 벌채를 포함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제1 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채 취 및 제30조에 따른 채석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입목벌채
 - ② 제1항에 따라 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 (이하 이 조에서 "방제완료서"라 한다)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방제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완료서 (이하 이 조에서 "방제계획서 등"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산지전용등</u>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 성할 수 있다.

- ④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 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 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 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재선충병방제계획서</u> 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신 설>

<u>경</u>
<u> </u>

④ 방제계획서등을 제출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방제계획서등
0]
·
(5)
방제계획서등
<u>.</u>
세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a. 2 (처해고, 가.O.)
1. ~ 3. (현행과 같음)
<u>4. 제1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u>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u><신 설></u>	5.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도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